

영등포구의회
제141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급공사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2008. 11. 6.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급공사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전문위원 권오운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급공사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제정이유

- 영등포구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의 고질적인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고 부실 공사를 사전에 예방하여 공사품질을 향상하도록, 불법하도급 행위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조례안임.

■ 주요내용

- 불법하도급 신고대상, 신고방법 및 접수에 관하여 규정함 (제2조~제3조)
- 포상금 지급요건, 지급신청, 지급기준 및 지급제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 접수내용 사실 확인 및 조치, 포상금 지급 및 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
- 신고자의 보호(안 제9조)
- 신고자가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등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관급공사의 고질적인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고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불법하도급 행위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부터 제3조에 신고대상 및 신고방법 및 접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일반인들도 신고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안 제4조부터 제6조에는 포상금지급요건, 지급기준 및 지급제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신고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하였고
 -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는 접수내용 사실 확인 및 조치, 포상금 지급 및 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심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 안 제9조는 신고자의 보호를 위해 공개를 금지하도록 하였으며

- 안 제10조는 신고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등 환수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본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불법·부당 하도급 행위를 신고 함으로써 주민참여기회를 제공하여 부실공사에 대한 감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불법하도급은 음성적으로 이루어져 신고자가 증빙자료를 확보하기가 어렵고 사법권이 없어 사실조사 등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고

타구에서 이와 유사한 조례를 제정한 곳이 있는지 있다면 운영 실적이 있는지 등에 대하여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8. 11. 6.

보 고 자 : 권 오 운

관 계 법 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①건설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획·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4.15, 2004.12.31>

1.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로서 건설공사에 관한 설계를 포함하여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가 하도급하는 경우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

②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려는 때에는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9.4.15, 2007.5.17>

③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5.17>

④하수급인은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4.15, 2007.5.17, 2008.2.29>

1. 제1항제1호 및 제3항 단서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하도급받은 전문공사의 일부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 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 나. 수급인의 서면승낙을 받을 것

제82조 (영업정지등) ②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업자(제5호의 경우 중 하도급한 때에는 그 수급인을 포함한다)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그 위반한 공사의 도급금액(제2호의 경우에는 하도급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제5호의 경우에는 5억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1999.4.15, 2004.12.31, 2007.5.17, 2008.2.29>

2. 제29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제한에 위반한 때
 -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96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9.4.15, 2002.1.26, 2007.5.17>

5. 제29조제1항 내지 제4항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7. 정당한 사유없이 제82조 또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에 위반한 자

제99조 (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 <개정 1999.4.15, 2002.1.26, 2004.12.31, 2007.5.17, 2008.3.21>

5.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하수급인이 제8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하거나 묵인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 (일괄하도급의 범위) ①법 제2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는 도급받은 공사(도급받은 공사가 여러 동의 건축공사인 경우에는 각 동의 건축공사를 말한다)를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주된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하는 경우로 한다.

②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획·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라 함은 건설업자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현장에서 인력·자재·장비·자금 등의 관리, 시공관리·품질관리·안전관리 등을 수행하고 이를 위한 조직체계 등을

갖추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5.6.30, 2008.2.29>

③법 제2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1999.8.6, 2007.12.28>

1. 도급받은 공사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별로 분할하여 각각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2. 도서지역 또는 산간벽지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를 당해 도서지역 또는 산간벽지가 속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있는 중소기업자 또는 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협력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제32조 (하도급등의 통보 <개정 1999.8.6>) ①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하도급계약등을 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8.6, 2008.2.29, 2008.6.5>

②감리자가 있는 건설공사로서 하도급등을 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감리자에게 통보한 경우는 이를 발주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9.8.6>

제79조 (건설공사실적의 기준) ①법 제82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2.9.18, 2005.5.7, 2007.12.28, 2008.6.5>

1. 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 또는 조경공사업의 경우 : 2억5천만원

2. 토목건축공사업의 경우: 5억원

2의2.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경우: 6억원

3.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가스시설시공업 제2종·제3종 및 난방시공업을 제외한다)의 경우 : 5천만원

②법 제82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05.5.7>

1. 영업정지처분으로 인한 영업정지기간이 6월이상인 때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서 6월이상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때

제80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기준등) ①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6과 같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위반행위와 관련된 공사의 특성 및 입찰방식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법 제83조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2.28, 2008.2.29>

③ 제2항에 따라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을 가중하는 경우 영업정지의 총 기간 또는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82조 및 법 제83조에 따른 기간 및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7.12.28>

제81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82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8, 2008.2.29>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8, 2008.2.29>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8, 2008.2.29>
- ⑤ 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 [본조신설 1999.8.6]

[별표 6] <개정 2008.6.5>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제80조제1항관련)

가. 법 제82조제1항 및 제82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별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

위 반 행 위	해당법조문	영업정지 기 간	과징금의금 액
4. 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허위로 한 때	법 제82조제1항제3호	4월	4,000만원
6. 「건설기술관리법」 제1 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82조제1항제5호 가목	1월	1,000만원

나. 법 제82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별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

위 반 행 위	해 당 법조문	영업정지 기 간	과징금의 비율(%)			
			5천만원 까지	1억원	5억원	30억원 이상
1. 법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때	법 제 82조 제2항제1호	8월	30	24	16	8
1의2. 법 제 28조의 제 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직접시공하지 아니한 때	법 제 82조 제 2항제 1호 의2	6월	24	18	12	6
2.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1인의 제3자에게 하도급한 때	법 제 82조 제2항제2호	8월	30	24	16	8
3.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2인 이상에게 하도급한 때	법 제 82조 제2항제2호	6월	24	18	12	6
4.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해당업종의 건설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법 제 82조 제2항제2호	6월	24	18	12	6

하도급(재하도급을 포함한 다)한 때							
5.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발주자의 승낙없이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때	법 제 82조 제2항제2호	4월	16	12	8	4	
6. 재하도급금지규정에 위반하였으나 해당업종의 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한 때	법 제 82조 제2항제2호	4월	16	12	8	4	
7.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법 제 82조 제2항제3호	2월	8	6	4	2	

비 고

1. 과징금의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각 구역사이의 도급금액 등 해당과징금의 비율은 직선보간(直線補間)의 방법에 의한다.
2. 직선보간(直線補間)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각 구역사이의 과징금이 당해구역의 도급금액 중 최고 금액에 해당하는 과징금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구역의 도급금액 중 최고 금액에 해당하는 과징금으로 한다.

[별표 7] <개정 2007.12.28>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제89조제3항관련)

위반행위	해당법조문	과태료의 금액
4. 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99조제5호	150만원
4의2.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하수급인이 제8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 행위를 지시하거나 묵인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정한다)	법 제99조제6호	150만원
4의3. 법 제31조의2에 따라 제출한 하도급계획(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제출한 하도급계획에 한정한다)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99조제7호	300만원

지방자치법

제22조 (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